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6월 8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8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6. 7.(월)	담당부서	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
담당과장	최영수 과장(044-203-4610)	담 당 자	유상열 사무관(044-203-4612)

「경제자유구역법」 일부개정법률 공포안, 국무회의 의결

- 그간 외투기업에 제공되던 임대료 감면,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특전을 비수도권 첨단·핵심전략산업 국내 투자기업으로 확대 -
- 특전 제공을 위해 경자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발전계획 수립 -
- 경자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,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**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법률 공포안**이 6월 8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

〈 추진 배경 〉

□ 경제자유구역(이하 경자구역)은 '03년 제도 도입 이후, **개발률이 89.8%*로 진전**되고, 최근 **입주기업 매출액, 일자리 등이 연평균 10% 이상 증가****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음

* (개발률) ('09년)29% → ('15년)60.1% → ('20)89.8%(11년간 60.8%p 증가)
** (입주기업수) ('16)4,656 → ('19)6,143개, 연평균 9.7% / (매출액) ('16)71.1 → ('19)111.3조원, 연평균 16.1% / (일자리) ('16)13.2 → ('19)18.3만명, 연평균 11.3%

○ 다만, **경자구역이 개발·외투유치 중심으로 운영**되어, 신(新)**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**한 상황

○ 이에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'20.10월)에서 **「경자구역 2.0, 2030 비전과 전략」을 발표**한 바 있으며, 동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은 **개정법률안이 5.2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**됨으로써 **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**됨

〈 주요 내용 〉

□ 이번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①경자구역별 **핵심전략산업을 선정**하고, ②**첨단기술·제품*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특전 제공**하며, ③**발전계획을 수립**하여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, 이를 추진하기 위한 ④**경제자유구역청**(이하 '경자청') **역할을 명시**하였음

*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술·제품으로 지식서비스 분야·나노융합분야·바이오 분야 등 33개 분야 2,990개 기술·제품

○ (**핵심전략산업 선정**) **경자청장**은 관할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**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**하고, **산업통상자원부장관**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**핵심전략산업을 선정*·고시**함

* (고려사항) ①기술적·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, ②경제자유구역별 특성·여건을 고려 육성·특화에 기여하는 산업, ③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, ④균특법에 따른 시·도의 지역특화산업

○ (**특전 제공**) **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자구역** 內 첨단기술·제품,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①조성원가 이하 분양, ②전용용지 입주, ③수의계약 허용, ④임대료 감면, ⑤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의 입지혜택을 제공

【 특전 제공 주요 내용 】

대상기업		주 요 내 용
기존	추가	
외투기업	(비수도권) 유턴기업, 첨단기술·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	-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 - 전용용지에 입주 허용
외투기업, 유턴기업	(비수도권) 첨단기술·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	- 국·공유지의 경우,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·매각 허용 - 국·공유지 임대 시 임대료 기준 재산가액의 1%, 100%까지 감면 가능 - 국·공유지 50년 이내 임대,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

○ (**발전계획 수립**) 시·도지사(경제자유구역청장)는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**5년마다 경자구역 발전계획을 수립*·시행**함

* (발전계획 포함사항) ①경제자유구역 발전목표, ②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, ③핵심전략산업 유치 현황과 여건 분석, ④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, ⑤핵심전략산업 육성·특화 계획 등

○ (**경자청 역할**) **경자청**은 **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** 및 육성·특화, 발전계획 수립, 입주기업의 **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,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·지원**, 산·학·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, 국내·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·시행 등의 업무을 추진

〈 향후 계획 〉

□ '**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**'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**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**하고, 법률 공포(6.15) 즉시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거쳐 **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**(9.16)**부터 시행**함

○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**핵심전략산업을 선정·고시**(10월)하고, **경자청은 연내 발전계획 수립**(12월)을 통해 경자구역 2.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

□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"경자구역은 세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**기존 개발·외투유치에 더해 혁신성장을 위한 세계적 신산업 발전기반 강화가 필요한 시점**이다"라고 말하면서,

○ "**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차질없이 수행**함으로써 **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**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력해 나가겠다"고 밝힘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유상열 사무관(☎ 044-203-46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